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49
----------	-------

발의연월일 : 2026. 1. 9.

발 의 자 : 안호영 · 박희승 · 이성운
박홍배 · 김주영 · 임오경
진성준 · 한병도 · 윤준병
허종식 · 서왕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매매·경매 등으로 사설장사시설의 소유권이 변동될 때의 유골보호 및 관리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규정이 미비함.

또한 사설장사시설의 소유권 변동 시 설치·관리자의 지위 승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신고 등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시설 운영의 공백과 사용자의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소유권 변동 시 설치·관리자의 지위 승계, 신고 및 사용자에게 대한 통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자 보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유골의 안정적 관리와 사설 장사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사설장사시설 설치·관리자 지위의 승계 등) ① 제15조제4

항 및 제16조제5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인 사설봉안시설 설치·관리자와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관리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설치·관리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설장사시설의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설치·관리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사설장사시설 설치·관리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는 종전의 설치·관리자와 사설장사시설의 사용 계약을 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라 한다)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양수인등은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안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계 사실, 양수인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30일 이상 게시하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⑦ 양수인등은 지위 승계 과정에서 사용료 및 관리비의 부과 또는 반환 기준 등 계약내용을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양수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날부터 10일 안에 해당 금액을 반환할 것

2. 사용자의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의 발급 절차를 마련할 것

3. 10명 이상의 사용자로 구성된 대표기구가 있는 경우 시설의 유지

· 관리 등 계약내용에 관하여 그 대표기구와 성실하게 협의할 것

제42조제1항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26조의2제8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설장사시설·설치 관리자 지위의 승계 등에 관한 적용례)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6조의2(사설장사시설 설치 · 관리자 지위의 승계 등) ① 제 15조제4항 및 제16조제5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인 사설 봉안시설 설치 · 관리자와 법인 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 · 관리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설치 · 관리자의 지위를 승계한다.</u> <u>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설장사시설의 시설 ·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설치 · 관리자의 지위를 승계한다.</u> <u>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u> <u>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u> <u>3. 「국세징수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u>

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사설장사시설 설치·관리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는 종전의 설치·관리자와 사설장사시설의 사용 계약을 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라 한다)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양수인등은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안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계 사실, 양수인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30일 이상 게시하고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
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
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
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⑦ 양수인등은 지위 승계 과정
에서 사용료 및 관리비의 부과
또는 반환 기준 등 계약내용을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서는 아니된다.

⑧ 양수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사
유가 발생한 경우 그날부터 1
0일 안에 해당 금액을 반환할
것

2. 사용자의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의 발급 절차를 마
련할 것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9. (생략) <u><신설></u> <u><신설></u> 10. ~ 13. (생략) ② (생략)	<u>3. 10명 이상의 사용자로 구성된 대표기구가 있는 경우 시설의 유지·관리 등 계약내용에 관하여 그 대표기구와 성실하게 협의할 것</u> 제42조(과태료) ① ----- ----- ----- -----. ----- ----- ----- ----- -----. 1. ~ 9. (현행과 같음) <u>9의2.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u> <u>9의3. 제26조의2제8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u> 10.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